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유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조정한 정원 1명을 원래 직급으로 환원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변경하며, 국가유산청의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

2) 입법예고(2025. 6. 00. ~ 6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

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6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3.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필수보존요소 지정·관리에 관한 사항
제8조제12항제14호 중 “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반출”을 “국가민속문화유산(궁능유적본부 소관 국가민속문화유산은 제외한다)의 수출 및 반출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.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제도의 운영·개선에 관한 사항

16. 고택 및 종가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·조정 및 총괄

제9조제2항 중 “과학기술서기관·임업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임업사무관·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5항제10호 중 “아파트, 학교기업의 시설”을 “아파트”로 한다.
별표 3 과학기술서기관·공업사무관·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다음에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행정사무관·임업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”을 신설하고, “과학기술서기관·임업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”을 삭제한다.

별표 4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행정사무관·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1 다음에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행정사무관·임업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”을 신설하고, “과학기술서기관·임업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”를 삭제, 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임업주사보·시설주사보·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“44”를 “43”으로, 행정서기·공업서기·임업서기·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“9”를 “10”으로 한다.

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1항 중 “별표 4의 정원 11명(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공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·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4명, 행정주사·사서주사·공업주사·임업주사·시설주사·방재안전주사·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5명, 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임업주사보·시설주사보·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명)”을 “별표 4의 정원 10명(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공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·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4명, 행정주사·사서주사·공업주사·임업주사·시설주사·방재안전주사·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5명, 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임업주사보·시설주사보·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)”으로, “별표 4의 정원 11명(행정주사·사서주사·공업주사·임업주사·시설주사·방재안전주사·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4명, 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임업주사보·시설주사보·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5명 및 행정서기·공업서기·임업서기·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명)”을 “별표

4의 정원 10명(행정주사·사서주사·공업주사·임업주사·시설주사·방재안전주사·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4명, 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임업주사보·시설주사보·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5명 및 행정서기·공업서기·임업서기·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문화유산국) ① ~ ⑤ (생략)	제8조(문화유산국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근현대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⑥ ----- -----.
1. ~ 11. (생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12. <u>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</u> <u>제도의 운영·개선에 관한 사항</u>	<u><삭제></u>
13. <u>고택 및 종가의 보존·관리</u> <u>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·조정 및 총괄</u>	<u><삭제></u>
14. ~ 22. (생략)	14. ~ 22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23. <u>국가등록문화유산의 필수보존요소 지정·관리에 관한 사항</u>
⑦ ~ ⑪ (생략)	⑦ ~ ⑪ (현행과 같음)
⑫ 민속유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⑫ ----- -----.
1. ~ 13. (생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14. <u>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</u>	14. <u>국가민속문화유산(궁능유적본부 소관 국가민속문화유산은 제외한다)의 수출 및 반출</u> ----
<u><신설></u>	15. <u>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</u>

<신설>

⑬ (생략)

제9조(자연유산국) ① (생략)

② 자연유산국에 자연유산정책과·동식물유산과·명승전통조경과 및 지질유산팀을 두되, 각과장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,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임업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⑥ (생략)

제11조(한국전통문화대학교) ① ~ ④ (생략)

⑤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9. (생략)

10. 대학원생 주택 또는 아파트, 학교기업의 시설, 전통문화상품개발실, 학생기숙사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

제도의 운영·개선에 관한 사항

16. 고택 및 종가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·조정 및 총괄

⑬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자연유산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임업사무관·행정사무관 -----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한국전통문화대학교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----- 아파트 -----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3]

국가유산청 공무원 정원표(제28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행정 사무관·임업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	<신 설>	<u>1</u>	+1
과학기술서기관·임업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	<u>1</u>	<삭 제>	-1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4]

국가유산청 공무원 정원표(제28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행정 사무관·임업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	<신 설>	<u>1</u>	+1
·	·	·	
과학기술서기관·임업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	<u>1</u>	<삭 제>	-1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임업 주사보·시설주사보·전산주사 보 또는 학예연구사	<u>44</u>	<u>43</u>	-1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·공업서기·임업서기 ·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	<u>9</u>	<u>10</u>	+1

	.	.	.	
	.	.	.	